

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) 제2항에 따라,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'23. 2분기 전용내역 : 1건, 11,500천원

○ 세부내역

(단위:천원)

연번	부서	정책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승인일
						증액	감액	
계					4,455,193	11,500	11,500	
1	자원순환과	효율적인 폐기물처리	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	공공운영비 (201-02)	5,500	11,500	-	'23.4.25.
				민간위탁금 (307-05)	4,449,693	-	11,500	

□ 전용사유

- 수탁기관 명의 민간손해보험을 적법한 보험으로 가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(대장가격 1억 원 이상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
 -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경우 민간손해보험에 수탁기관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'서울특별시' 명의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전환 가입을 위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전용

※ 민간위탁 사업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금 조정액(미교부액) 등 활용